

# 「청년 추가고용 장려금」 지원제도 안내

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4호에 따라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에서 청년(15세~34세)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채용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「청년추가고용장려금」을 지원합니다. ※ 1인~4인 기업도 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·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가능

## ❖ 지원요건

- ① `18.1.1.~18.12.31.에 청년(만15~34세)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(기업규모별 1~3명 이상) ② 전년도말(17.12.31.)보다 신규채용 청년을 포함한 총 근로자수 증가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최저임금 준수

### <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>

기업 규모	청년 신규채용
30인 미만	1명 이상
30인~99인	2명 이상
100인 이상	3명 이상

## ❖ 지원내용

청년 추가채용 **1명당 월75만원** 한도로 최대 **3년간** 지원(기업당 최대 90명)

구분	1인당 연간 지원금액	1인당 1개월 지급액
`18.1.1.~18.3.14.입사자	6,666,660원	555,550원
`18.3.15. 이후 입사자	9,000,000원	750,000원

## ❖ 신청방법

청년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역(曆)에 따른 1개월마다 다음 서류를 갖춰 신청(고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, 다만, '18. 5.31.이전 채용자는 '18.11.30.까지 신청가능)

-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(「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[별지 제1호 서식])
- ② 근로계약서 사본 1부
-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, 임금 이체내역

※ 신청서식 다운로드 : 광주고용복지\*센터 홈페이지 → 정보마당 → 서식자료실

## ❖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(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)

- ①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②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
- ③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
- ④ 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⑤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
- ⑥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
- ⑦ 월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근로자
- ⑧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(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포함)와 같은 경우
- ⑨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한 경우(해당 근로자 사업자등록, 고교·대학 재학중 등)
- 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⑪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등
- ⑫ 소비·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(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)
- 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, 국가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
- 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[장려금 등의 상호조정: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기업(사업주)]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(사업주)
- ⑮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12개월)에 있는 기업(사업주)
- ⑯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(단, '18.1.1.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되어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가능)

## ❖ 문의

- 광주고용복지\*센터 기업지원과(제주 포함) ☎ 062-609-8653~8
- 광주광산고용복지\*센터(광산구, 영광, 함평) ☎ 062-960-3201, 3209